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52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김재섭·신성범·김기웅

천하람 • 이준석 • 박정하

유영하 • 우재준 • 강명구

강승규 • 주호영 • 김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 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79조).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에서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하여 다수 승객의 통 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9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위한 금지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에서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하여 다
	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
	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u>주는 행위</u>
<u>11.</u> (생 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u>제49조제2항을</u>	제79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4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
	여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

	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
	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u><신 설></u>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
	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